

각국의 안전관계 법령집

– 오스트레일리아 –

박 창 복

〈위험관리정보센터 차장〉

1.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체계

가. 오스트레일리아법의 특징

(1) 연방법과 주법

오스트레일리아는 6개의 주(state)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특별지역(Australian Capital Territory:ACT)과 북부 준주(Nothern Territory)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며, 연방과 주 각각에 입법권이 있다.

연방의 관할 사항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헌법 5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통상·주 통상·세제·외교·국방 등이 포함된다. 주의 관할 사항은 주 내의 통상 등이며, 각 주의 지방 행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등에 규정되어 있다.

방화·방폭·노동 안전은 주의 관할사항이다. 주의 관할사항에 대해서 주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근년에 인식되어 가능한 한 모든 주에 통일된 법령규칙의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면, 건축 관련은 각 주의 관할 사항이지만 상공기술성(Department of Industry, Technology and Commerce) 내의 오스트레일리아 통일건축규칙조정위원회(Australian Uniform Building Regulations Co-ordinating Council; AUBRCC)가 Building Code of Australia를 작성하고 있다. 각 주의 건축법 등에서는 이

코드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 내용에는 뉴사우스웨일즈주와 많은 호텔이 건설되는 퀸즈란드주에 대해 기술한다.

(2) 영국법의 영향

1926년 영국의 종주권을 인정하면서 독립된 역사적 배경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법은 영국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는 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져 영국법과 마찬가지로 미국법의 영향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국과 같이 명문화된 제정법 외에 지역의 관습을 기초하여 판례에 의한 법이 형성된 판례법주의를 취하며, 명문화된 법률이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영국과 같이 현행법의 검색이 곤란하다. 예를 들면, 퀸즈란드주법의 경우, 그 해에 발행된 법률 및 개정 법률은 매년 발행된 퀸즈란드 제정 법령집(Queensland Statutes)에 게재된다. 최신의 제정 법령집의 연초에 발행된 법률은 문제가 없으나 개정된 법률은 개정된 것만 게재되므로 현행 법률을 검색하는 데에는 과거로 소급하여 검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 법률을 수집하는 데에는 꽤 노력이 필요하다.

나. 건축에 관한 인·허가사항

오스트레일리아의 건축에 관한 인·허가사항은 각 주의 법령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건축신청관련은 지방행정

부법(Local Goverment Act 1919) 제11장 및 오스트레일리아 빌딩 코드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2. 오스트레일리아의 방화·방폭에 관한 법령 규칙

가. 방화·방폭에 관한 법령 규칙의 개요

방화·방폭은 각 주의 지방행정부법 등에서 주의 관할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주마다에 규정이 다르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오스트레일리아 전체에서 통일된 규칙이다. Building Code of Australia가 정해져 있다. 건축물의 구조, 내화, 피난 등은 이 코드에 규정되어 있다. 기술적 사양에 대한 상세는 이 코드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규격에 따른다는 뜻이 정해져 있다.

노동자의 안전 위생의 관점에서 주의 공장법에도 방화·방폭에 대한 대충의 규정이 정해져 있다.

나.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방화·방폭에 관한 법령 규칙

(1) 지방 행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919)

지방 행정 일반에 대해서 정해진 주법이다. 제

11장에 건축물의 일반, 건축 신청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건축, 소방에 관한 상세는 지방 행정부법에 기초하여 규정된 “오스트레일리아 빌딩 코드(행정규정)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2) 오스트레일리아 빌딩 코드(행정규정)조례(N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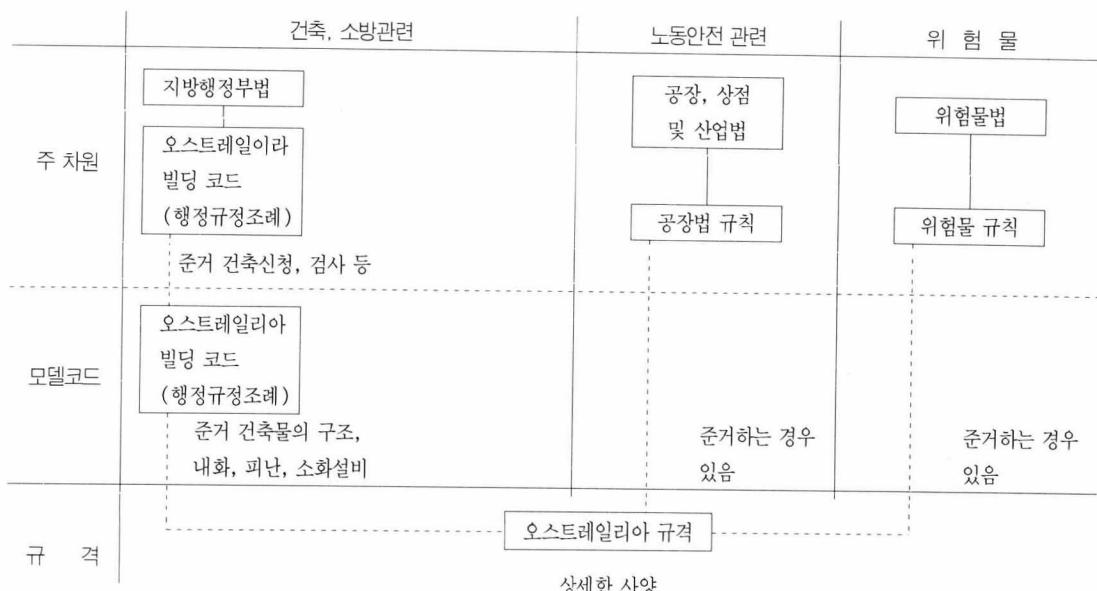
건축, 소방관련을 규정한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조례이다. 1.2조에 오스트레일리아 빌딩 코드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축 신청 양식도 제재되어 있다.

(3) 뉴사우스웨일즈주 규칙(Ministerial Specification No 10)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빌딩 코드 발행 이전은 Ordinance 70이 건축 소방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Ordinance 70을 기초로 규정된 규칙이다. 1993년 이후는 Ordinance 70은 무효가 되고, 건축 소방관련은 전부 오스트레일리아 빌딩 코드에 의해 규정된다. 다만, Ordinance 70 무효 이후에도 뉴사우스웨일즈주 규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 규칙에는 옥내소화전의 입상관, 물 공급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방화·방폭에 관한 법령 규칙



비, 소화전, 호스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옥내소화전의 입상관, 물 공급설비, 소화전, 호스릴 등은 오스트레일리아 빌딩 코드가 규정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나, 오스트레일리아 빌딩 코드의 부칙에서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독자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다. 퀸즈란드주의 방화·방폭에 관한 법령 규칙

(1) 건축법(Building Act 1975)(QLD)

건축조례의 제정, 건축자문위원회, 지방관청의 권한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이다. 건축 소방에 대한 상세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건축규칙(Building Regulation 1978)

(QLD)

건축신청의 인·허가 관련의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다.

(3) 건축조례(Standard Building By-Laws 1991)(QLD)

1.4조에 오스트레일리아 빌딩 코드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축신청, 검사 등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라. 기타 주의 방화·방폭에 관한 법령 규칙

뉴사우스웨일즈주, 퀸즈란드주 이외의 주에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규칙이 정해져 있다. 각각 건축신청이나 검사에 대해 규정하고, 상세는 오스트레일리아 빌딩 코드에 따른다고 정해져 있다.

(1) 빅토리아주(VIC)

건축법(Building Control Act 1981)(VIC)

빅토리아건축규칙(Victoria Building Regulations 1983)(VIC)

(2) 남 오스트레일리아주(SA)

건축법(Building Act 1971)(SA)

건축규칙(Building Regulations 1991)(SA)

(3) 서 오스트레일리아주(WA)

지방행정부법 (Local Government Act 1960)
(WA)

건축규칙조례(Building Regulations Order 1989)(WA)

지방행정부조례(건축물)(Local Government <Buildings> Order 1989)(WA)

도시계획통일조례(건축물)(Town Planning <Building> Uniform General By-Law 1989)(WA)

(4) 타스마니아주(TAS)

지방행정부법 (Local Government Act 1962)
(TAS)

(5)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특별지역(ACT)

건축법(Building Act 1972)(ACT)

건축규칙(Building Regulations)(ACT)

(6) 북부準주(NT)

건축법(Building Act 1983)(NT)

건축규칙(Building Regulation 1991)(NT)

마. 오스트레일리아 빌딩 코드(Building Code of Australia 1990)

오스트레일리아 빌딩 코드는 상공기술성 내의 오스트레일리아통일건축규칙조정위원회에 의해 작성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통일의 빌딩 코드이다. 이 빌딩 코드는 타스마니아주를 제외한 모든 주 및 준주의 법령 규칙에 의해서 따르고 있다.

타시마니아주는 1992년 말경에 오스트레일리아 빌딩 코드에 따르는 법령을 발행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빌딩 코드는 다음에 열거하는 A-H장 및 각 주의 규제로 이루어진다. A-H장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광대한 전체의 규제에서는 불비한 것에 대해서 권밀에 각 주의 독자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A장 일반 General Provisions

B장 구조 Structure

C장 내화 Fire Resistance

D장 피난 Access and Egress

E장 서비스, 설비 Services and Equipment

F장 안전, 환경 Health and Amenity

G장 기타 Ancillary Provisions

H장 특별한 건축물 Special Use Buildings(극장 등)

각 주의 규제

오스트레일리아 빌딩 코드에서는 가옥, 사무소, 상업용 시설, 공장 등 건축물을 10등급으로 분류하여 건축물의 구조, 방화 등을 정하고(A 3장, 자료 2), 더욱이 상세한 기술적 사양은 오스트레일리아 규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A 1.2조, A 1.3조).

각 조문에 관한 상세한 규칙은 각 장의 규칙(Spec)으로서 게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A 1.3 조의 상세한 규칙(spec A 1.3)은 A장의 끝에 게재되어 있다.

바. 법령규칙 중에서 요구되는 규격과 실무상의 운용

(1) 오스트레일리아 규격(Standards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규격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화학, 농업,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제품, 서비스의 벤치 마크로서 오스트레일리아 규격협회(Standards Association of Australia; SAA)가 정한 것이다. 현재, 약 5,000종의 규격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규격 중에는 영국 규격(BS)을 그대로 채용한 것 및 약간 수정을 가하여 영국 규격을 채용한 것이 있다.

건축, 소방관련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빌딩 코드(Building Code of Australia) A1.3에 있어서 기술적 사양은 오스트레일리아 규격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규격 번호도 게재되어 있다(Spec A1.3).

(2) 기타 규격의 적용

기타 규격의 적용에 대해서는 시(City), 군(Shire)의 의회에 교섭하여 인정되면 어떤 규격이라도 사용되나, 원칙적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규격, 영국 규격이 사용되고 있다.

3. 오스트레일리아의 방화·방폭에 관한 규칙

가. 방화·방폭에 관한 법령 규칙 및 요구사항의 총괄 프레임

오스트레일리아의 방화·방폭관련의 규정은 대개의 구체적인 사항은 “오스트레일리아 빌딩 코드” 및 거기에 따르는 “오스트레일리아 규격”에서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마다에 다른 규정은 적다.

(1) 뉴사우스웨일즈주(별도자료 참조)

(2) 퀸즈주(별도자료 참조)

나. 방화·방폭에 관한 법령규칙의 특정설비에 의한 프레임

(1)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규칙(뉴사우스웨일즈주의 예)

구조에 관한 규정은 오스트레일리아 빌딩 코드 자체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많고, 오스트레일리아 규격에 따르는 경우는 적다.

(2) 피난설비에 관한 규제(뉴사우스웨일즈주의 예)

피난설비에 관한 규정도 구조와 같이 오스트레일리아 빌딩 코드 자체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많고, 오스트레일리아 규격에 따르는 경우는 적다.

(3) 화재감지·경보설비에 관한 규제(뉴사우스웨일즈주의 예)

화재감지·경보설비는 오스트레일리아 빌딩 코드에서는 대충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데에 머물고, 상세는 오스트레일리아 규격에 규정되어 있다.

(4) 소화설비 그 외의 규제(뉴사우스웨일즈주의 예)

소화설비도 화재감지·경보설비와 마찬가지로 오스트레일리아 빌딩 코드에서는 대충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데에 머물고, 상세는 오스트레일리아 규격에 규정되어 있다. ⑥

참고 : 본 내용 중의 원문 참조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협회 위험관리정보센터(T:780-4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